

# 공정위,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 무게 중심이 대금·지연이자·수수료 미지급, 부당특약 설정 등에서 추가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지급 여부로 확대되고 있다. 공사물량이 추가·변경됐는데도 수급사업자에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들이 여전히 제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서다.

## 1. 발주자한테 준공금 받고도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 미지급

### ■ ○○건설(주) 위반 행위 내용

- ○○건설(주)는 □□문화관리(주)가 발주한 '숲숲북 합문화센터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 건설 공사' 중 건축 음향 공사 및 수장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가 시공한 추가 공사분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건설(주)는 발주자로부터 수급 사업자의 추가 공사분을 포함한 준공금을 수령하였으나 수급 사업자와 정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 공정위 제재 내용

-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 명령

## 2. 변경 계약서 미발급 및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 미조정 행위

### ■ (주)△△미창건설 위반 행위 내용

- 계약서 미발급 행위
  - (주)△△건설은 A사와 B사에게 각각 건설 위탁한 '(주)◇◇ 본사 사옥 신축공사 중 창호 공사 및 수장 공사'에서 설계가 변경되어 기간 연장과 금액 증액 등이 바뀌었으나, 이를 반영한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음
- 설계 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미조정 등 행위
  - (주)△△건설은 설계가 변경되어 발주자로부터 도급 계약 금액을 증액 조정받고 증액된 대금을 대부분 지급받았으나, 수급 사업자들에게는 증액 조정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않고, 30일 이내에 설계 변경 내용과 비율에 따른 하도급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않음



있으며, 또한 증액된 도급 대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 창호 공사가 정상적으로 준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에 따른 분쟁을 이유로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현금 결제 비율 미유지 및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미이행 행위
  - 도급 공사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수급 사업자 A사에는 일부만 현금(31.96%)으로 지급하였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면제 사유가 아님에도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음

■ 공정위 제재 내용

- 향후 금지명령 및 교육이수명령

### 3. 기대효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로 건설현장에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와 정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설계 변경과 관련하여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추가 물량을 정산하지 않는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사 분쟁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자보수비용 등을 이유로 대금 일부를 1~2년 간 지급하지 않거나 차기 대금을 지급할 때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유보금을 설정해 놓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서면서 유보금 관행에 따른 제재도 예고되고 있다.

